

활동기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지부'라 한다.)의 정관 제30조1항에 의하여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기본원칙) 활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1. 지부의 정관과 규정, 규칙을 준수한다.
2. 지부의 목적과 활동원칙에 따른다.
3. 활동기구는 자발성, 다양성, 투명성, 인권(캠페인)지향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을 원칙으로 하여 활동한다.
4. 국제앰네스티 전략계획과 국제대의원총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3조(활동기구의 종류) 활동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룹
2. 네트워크

제2장 그룹

제4조 (그룹의 설립요건) ① 설립목적은 지부의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② 그룹 구성원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그룹 구성원은 지부의 운영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2. 그룹 설립 시 구성원은 지부의 목적과 활동원칙 및 각 그룹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5인이상의 운영회원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단, 그룹승인 후 대표를 포함한 임원 2인을 제외한 구성원에게는 대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그룹은 특정 인권주제나 지역, 대상, 또는 활동방법 등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그룹의 설립절차 및 승인) ① 그룹을 결성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구비하여 사무처를 통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1. 그룹설립신청서 1부
2. 회원명단 1부

② 이사회에 승인 후 6개월의 준비모임 단계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1. 활동보고서
2. 그룹회칙

③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정식그룹으로 인정된다.

④ 승인여부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승인되지 않을 시 이사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그룹의 명칭사용) 그룹의 공식명칭은 숫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룹의 특성이 명확한 경우, 숫자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제7조(그룹의 권리) 그룹은 자율적으로 활동의 내용을 정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갖는다. 또한 지부의 재정상황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그룹의 의무) 그룹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그룹은 활동보고서, 변경 시 그룹회칙을 매년 정해진 시기에 사무처를 통해 이사회에 보고한다.

2. 모든 그룹 구성원은 지부의 규정과 지침을 따른다.

제9조 (그룹의 해산) 그룹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그 그룹의 대표는 구성원 과반수가 서명한 해산 결의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상실) 그룹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1. 앰네스티 규약·규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그룹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3.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3 장 네트워킹

제11조 (네트워킹의 설치) 네트워킹은 지부의 활동단위로서 지부 사무처는 특정한 이슈나 주제 등에 따른 네트워킹을 설치할 수 있다. 네트워킹은 캠페인사업에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주제나 대상, 또는 활동방법에 따라 설립된다.

제12조 (네트워킹의 구성) ① 네트워킹은 그 주제나 대상, 또는 활동방법에 동의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들과 지지자들, 담당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운영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네트워킹은 주제별/국가별로 구성하며, 시기와 인자들 즉, 네트워킹 운영의 역량투입 가능성에 기반 하여 구성 한다.

③ 회원은 네트워킹과 그룹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다.

제13조 (네트워킹의 운영) 네트워킹의 활동내용은 한국지부의 캠페인사업에 의해 결정된다.

1. 각 네트워킹은 코디네이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2. 네트워킹의 지원 및 운영은 사무처의 담당자와 네트워킹의 코디네이터가 담당한다.
3. 각 네트워킹은 별도의 운영 안을 작성하여야 공개한다.

제14조 (네트워킹의 의무) 네트워킹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활동을 보고한다.

제15조 (네트워킹의 해체) 앰네스티의 활동계획에 의해 네트워킹을 해체할 시, 사무처는 해체에 정 3개월전까지 구성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체사유에 대해 공개한다.

제 4 장 보칙

제 16 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을 개정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11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8월 20일 개정 시행한다.